설계자	확인자	설계년월일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2단계 : 교통모형 구축 및 스마트모빌리티 전략 수립”

과 업 지 시 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3

3. 과업내용 3

4. 과업의 일반원칙 8

5. 과업수행 방법 10

6. 과업성과품 제출 11

7. 보안대책 12

Ⅱ. 예정공정표 14

Ⅰ. 과업지시서

1. 개 요

□ **과업명** :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
"2단계 : 교통모형 구축 및 스마트모빌리티 전략 수립"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키이우 지역 (Region, 키이우시와 키이우주)
* 면적 : 28,970㎢ (키이우시 839㎢, 키이우주 28,131㎢)
* 인구 : 476만명 (키이우시 296만명, 키이우주 180만명)

○ 내용적 범위
- 키이우 지역 교통예측 모형 구축
- 통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전략 수립
- 주요 교통인프라 위치선정, 사업 계획 수립
- 역량강화교육 (초청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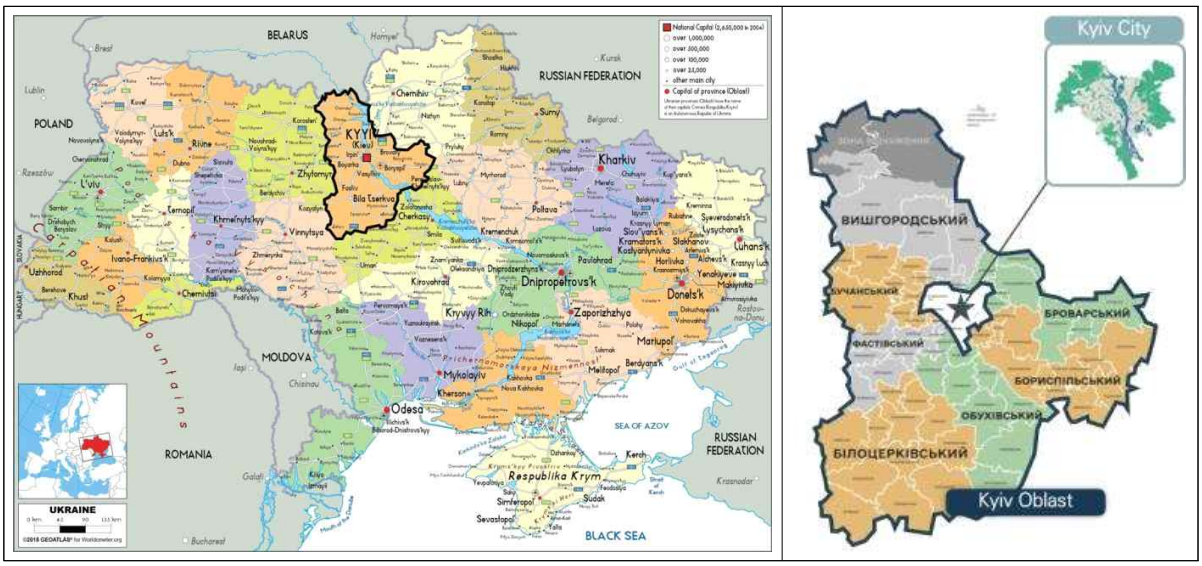

<키이우 지역 위치도>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배경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양국간의 장기간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주택, 교통, 에너지, 산업 분야 등에서 피해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1,520억불, 유실액은 4,990억불로 추산되며, 재건수요는 4,860억불로 추정되고 있음 (World Bank, ‘23.12,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 주택의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분야로서 전체 주택 1천8백만호의 9%인 157만호가 파괴되었거나 파손되었으며 피해액은 559억불, 재건 수요는 803억불로 추정됨. 또한 우크라이나의 대도시 지역의 80%가 소비에트 시대에 건설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아파트여서 재건 수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교통은 두 번째로 피해가 큰 분야로서 도시교통 인프라, 철도, 지방도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전투가 오래 지속된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피해액은 336억불, 재건수요는 737억불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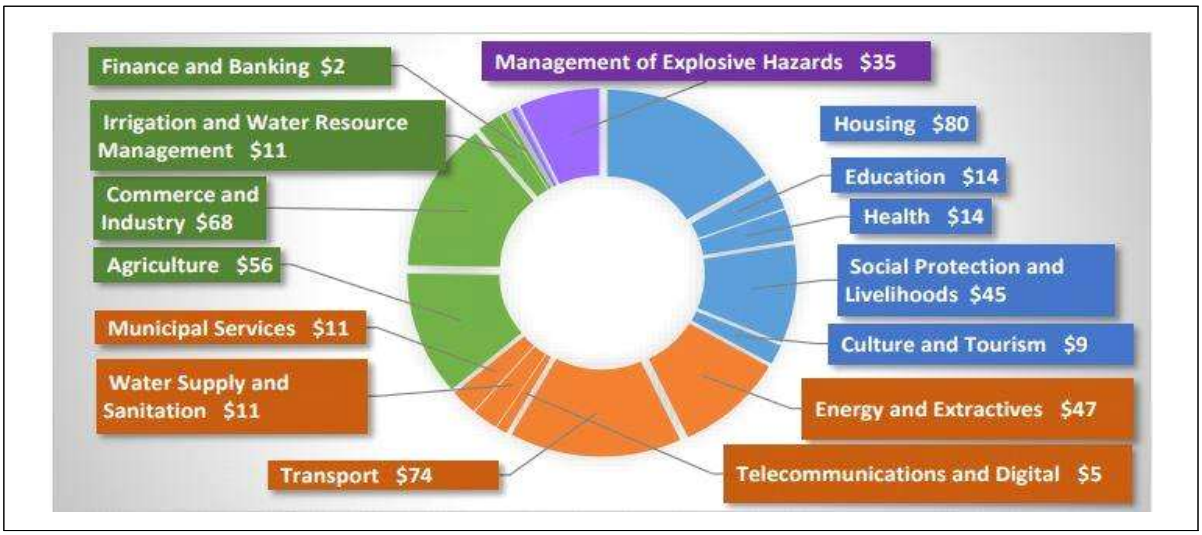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복구 수요 현황, 2024-2033>

자료) World Bank, ‘23.12,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3

- 국토교통부는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 개발부와 재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23.5)하였으며, 양국 정상간 회담(’ 23.7)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 체결(’ 23.9)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중에 있음

o 과업의 목적

- 우크라이나 정부(공동체·영토·인프라 개발부)는 한국의 FS 지원 사업을 통해 키이우 지역의 복구 비전을 수립하고, 공간 개발 및 복구 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전쟁 피해로 인한 키이우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키이우 지역내 교통 모델링 및 통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도 함께 요청하였음

- 과업의 내용적, 시간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 과업을 2단계로 나누어 수행중 이며,
- 본 과업은 2단계로 키이우 지역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복구 및 개발을 위한 교통예측모델 개발, 통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전략 등을 통하여 1단계 재건계획 수립 및 공간개발 과업과 연계한 키이우 지역의 통합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한국의 재건 및 도시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후속 과업에서 우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한국 기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우크라이나 정부 및 현지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내용별로 현지 또는 국내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단계 과업수행자로부터 1단계 과업 성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2.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6개월)

3. 과업 내용

1) 키이우 지역 장래 교통계획 및 재건 마스터플랜 검토

□ 기존 교통 마스터플랜 및 정책 검토

ㅇ 키이우 지역의 개발전략 및 전후 재건과 복구 관련 교통계획(교통인프라, 대중교통,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등

* 현 시점에서 유효하고 유관한 계획 및 정책 중심 검토

ㅇ 교통부문 우크라이나의 현행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

□ 공간 개발 및 재건 마스터플랜 검토

ㅇ 키이우 지역 공간 개발 계획 및 전후 재건 마스터플랜 검토

ㅇ 1단계 과업 수행내용 및 관련자료 검토

2) 키이우 지역 교통환경 및 교통현황 조사 분석

□ 일반현황 조사

ㅇ 교통 영향권의 사회경제지표 조사

- 인구수, 학생수, 종사자수, 주택 및 가구수, 지역생산지수 및 교통수단별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등) 등록대수 등 현황 및 추이 관련 통계자료

ㅇ 일반 교통환경 현황 조사

- 키이우 지역의 교통인프라(철도, 도로, 공항, 터미널, 역사 등), 이동 수단, 모빌리티 구축 및 운영 현황(피해 상황 포함)

□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ㅇ 도로, 철도, 공항, 터미널, 역사 등 교통시설 구축 현황(피해 상황 포함) 및 이용실태

ㅇ 대중교통 운영 및 이용실태(키이우시 자전거망 포함)

ㅇ 주요 도로의 교통소통 상황 조사 및 분석

ㅇ 키이우 지역 교통 문제점 진단

□ 키이우 지역 통행특성 조사

ㅇ 분석지역 내 주요 교통축의 도로 및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특성 파악

ㅇ 분석지역 관련 기 정립된 교통수요 예측모형(국가 교통모형, 지역간 교통모형, 지역내 교통 모형 등) 조사

□ 통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건 조사 및 분석

ㅇ 키이우 지역의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통신인프라 및 교통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교통시설물, 교통량 및 속도 등 기 구축된 교통시스템 관련 조사

ㅇ 키이우 주정부, 시정부, 이해관계자,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행 가능성 등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 검증과 구축 대상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검토

3) 장래 키이우 지역 교통여건 전망 및 교통인프라 개선방안 제시

□ 교통수요 예측 모형 구축 및 장래 교통여건 전망

ㅇ 기존 교통모형의 활용성 검토

- 기존의 네트워크, OD, 대중교통 정보 등의 활용
- 우크라이나 기존 교통모형과의 동기화, 정합성 및 매개변수 갱신

ㅇ 교통수요 예측모형 구축

- 교통수요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빅데이터 활용 포함)
- 키이우 지역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교통존 설정 및 교통망 구축
- 현황 정산을 토대로 입력자료 및 모형의 적정성 검증
- 교통수요 예측 단계별 모형 설정

* 우크라이나 정부, 키이우주 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수행방안 협의 필요

□ 장래 교통여건 전망

ㅇ 전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계획과 연계한 교통수요 예측

- 목표연도별, 시나리오별 교통수요예측

ㅇ 장래 교통수단별 분담률, 도로 혼잡수준, 대중교통 이용여건 등 전망

* 분석결과는 우크라이나 교통당국 검증 또는 승인 필요

□ 교통인프라 개선 및 확충

ㅇ 공간개발과 재건계획의 실현 및 지원을 위한 교통인프라의 복구, 개선, 신설 등 교통망 개선방안 수립

- 도시내부 도로의 경우 혼잡 교차로 개선방안 수립 등

ㅇ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를 위한 대용량 교통수단 확충방안 및 제시

- 도시철도(또는 철도) 연장, 버스기반의 신교통수단(BRT 등) 도입, 철도기반의 신교통수단(LRT 등) 도입 등에 관한 방안 수립

ㅇ 키이우 지역 개발과 대중교통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체계 정비 및 환승체계 구축 방안 제시

-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계획과 연계한 버스노선체계 정비 방안 수립
- 복합 환승센터 등 TOD 개발 방안 수립

4) 통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 통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현 가능성 검토 및 선정

- ㅇ 통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현 기술, 기능 및 시스템 파악
- ㅇ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별 및 통합 서비스 구현 가능성 검토
- ㅇ 기술적 및 기능적 적용 적정성에 따른 통합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선정
- ㅇ 선정된 구현 서비스에 따른 시스템별 구성요소 도출

□ 통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 ㅇ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방안
- ㅇ 자율주행차 인프라 디지털화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 ㅇ 보행환경 중심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구축 및 연계 정보제공 방안
- ㅇ AI/드론/디지털트윈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ㅇ MaaS, UAM (Urban Aviation Mobility), PM (Personal Mobility) 등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및 제공방안
- ㅇ 교통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및 실시간 주차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 ㅇ 통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교육훈련,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5) 우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 1단계 용역 지원을 위한 우선사업 선정

- ㅇ 1단계 용역에서 제시된 최적대안의 시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인프라 개선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1단계 용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
  - 사업비, 운영비, 사회적 편익, 운임수입 등의 분석결과를 제공

□ 2단계 용역을 통한 교통인프라 필요 사업 검토

- ㅇ 교통인프라 개선 및 확충과 통합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전략을 통해 검토된 추가적인 부문별 교통인프라 사업 및 우선순위 제시
- ㅇ 부문별 교통인프라 단위 사업의 재원조달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방안

□ 스마트 솔루션을 내재한 시범사업 제안

ㅇ 교통인프라 개선과 통합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전략을 연계한 시범사업 제안

* 예) 스마트교통관제센터, BRT, 연계환승센터 등

6) 교통분야 협력 강화 및 수원국 역량강화 계획 수립

□ 사업관계자 및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ㅇ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험 공유,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통모형 활용 및 유지관리, IT기술을 활용한 교통수요예측 기법
- 교통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 스마트 모빌리티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 정책, 기술 및 사례 등

* 초청인원은 10인 내외, 기간은 7일 기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세부사항 확정

□ 현지 워크숍 개최

ㅇ 과업 성과물의 원할한 협의 및 설명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추진

ㅇ 최종보고회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초청연수와 현지 워크샵은 전쟁 여파, 입·출국 허가 및 기타 여건상 개최가 어려울 경우, 감독원 및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개최,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적정 대안으로 대체 가능

□ 과업 수행시 참고자료

ㅇ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 및 작성한 자료

* National Transport Modelling, Kyiv City Transport Modelling 등 필수 자료 검토 필요

ㅇ WB, EBRD, EIB, UNECE 등 국제기구,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

ㅇ 타 국가 정부, EU 등 국제 연합 등이 작성한 자료

ㅇ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RC2022) 등 재건관련 국제회의 등에서 발표된 자료

ㅇ 기타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재건 관련 자료

4. 과업의 일반원칙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물 작성**

○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성과물 등은 국문, 영문 및 우크라이나어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사업주 수행〉 과업(해당 시)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주 수행〉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수행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5. 과업수행 방법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

○ 사업대상국의 인문, 자연, 경제,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

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 국토부 및 공사 요청시 추진현황 보고회의 참석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6. 과업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파트너 및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수정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수정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Ⅱ. 예정공정표

항목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현황조사							
2. 교통모형 구축							
3. 스마트 모빌리티							
4. 역량강화							
5. 성과품 작성							
보고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과업진도율	당기	10	15	15	20	20	20
	누적	10	25	40	60	80	100